

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29.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1. 4. 17
- 다. 상정일자 : 제8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 조례특위 (2001.4.17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현평창군 고용직 총정원은1명으로 이에 대한 현원은 없으며,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금년 상반기 정원조정시 고용직 정원의 감축이 강원도와 협의되어 있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되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평창군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본 조례는 조례 제697호로 1981. 12.31일 제정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.
- 그간 아홉차례의 개정을 통해 평창군 소속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**현재 고용직 공무원도 없고 2차 구조**

조정에 따라 정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: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1부